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1일, 소형준 의원 외 17인 발의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2)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3)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 입법예고: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개정안은 경로당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 「노인복지법」 제47조¹⁾ 규정에 따라 경로당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83개소이며, 이 중 구립은 59개소이고 사립은 124개소로 총회원 수는 5,649명이며, 2024년 경로당 지원예산은 14억 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음.

〈경로당 현황〉

구 분	계	주 거 별			면 적 별			등록 회원수
		단독	아파트		33㎡ 미만	33㎡ ~66㎡	66㎡ 이상	
			일반	임대				
계	183	64	100	19	9	45	129	5,649
구립	59	59	-	-	3	25	31	1,961
사립	124	5	100	19	6	20	98	3,688

〈2024년도 경로당 지원예산〉

항 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액
계				14억 300만원
운영비	월46만~50만원(12개월)	전체 등록경로당	면적별 차등	11억 4,000만원
냉방비	월165천원×2개월 (7~8월)	구립,사립단독경로당 임대·150세대 미만(아)경로당	지원 한도 내 실비	1억 6,200만원
난방비	월40만원×5개월(11~3월)			
양곡비	연20kg×8포	전체 등록경로당	-	1억 100만원
	연20kg×2포(구비추가)			

1)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경로당 중식 예산 경우 운영비와 양곡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경로당별 중식 이용 인원의 차이가 있어 운영비 외에 중식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023년 12월 기준²⁾, 우리구의 전체 인구 43만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여 명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이미 고령사회³⁾를 넘어선 수치로 우리 구는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경로당 이용자의 수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음을 비춰볼 때 경로당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나.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중식 제공을 위해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되며, 노인복지 증진 및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주·부식비를 추가로 보조하게 될 경우 개소당 평균 월 65만원 기준으로 연간 14억 2,700만원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구체적인 수요인원 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2) 출처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3) UN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노인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노인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규정하고 있음.

4) 경로당 개소당 평균 월 65만원 기준 x 183개소 x 12개월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5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0일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2024.6.30.) 및 수탁 반납의사 표명에 따라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재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 고(前 위탁현황)
		대지	건물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오패산로16길 23(하월곡동)	1,274	2,015 지하1/지상4	2005. 3. 2	사회복지법인 해명 (위탁기간 2019. 7. 1 ~ 2024. 6. 30)

2) 위탁기간: 2024. 7. 1. ~ 2029. 6. 30.(5년)

3) 위탁방법: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

4) 위탁사무의 범위

-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 원칙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3월 2일 개소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5)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재단에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월곡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소재지	시설현황(m²)	연간사업비 (2024년 기준)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 조직
성북구 오폐산로16길 23(하월곡동)	전용공간 2015.4m² (지하1층/지상4층)	총 1,126,749천원 - 인건비 : 974,730천원 - 운영비 : 135,039천원 (사: 70% 구: 30%) - 기 타 : 16,980천원 (사: 100%)	2019.07.01. ~ 2024.06.30.	사회복지법인 해명	관장 포함 22명

나. 주요내용

-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나, 이번 위탁은 2024년 1월 25일 수탁체에서 수탁운영 반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⁶⁾을 추진하려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⁸⁾ 및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이번 재위탁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7.(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5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4년 하반기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아름드리 어린이집 (조현희)	장월로 160 (장위3동)	개 인 (조현희)	45/36	2019.08.01. ~ 2024.07.31.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2	푸른샘 어린이집 (우정옥)	장위로19길 35 (장위1동)	개 인 (우정옥)	65/63	2019.09.01. ~ 2024.08.31.
3	북악 어린이집 (김선옥)	솔샘로6마길 5 (정릉3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57/35	
4	새날 어린이집 (이영선)	종암로25길 29 (종암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43/35	
5	석관 어린이집 (김진애)	화랑로40길 27 (석관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44/24	
6	솔샘 어린이집 (양승임)	보국문로16가길 82 (정릉4동)	사회복지법인 백강복지재단 (황연옥)	72/64	
7	웅지 어린이집 (임영미)	길음로9길 113 (길음1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제일교회 (정주근)	87/58	
8	장위1동 어린이집 (박선화)	월계로32길 15 (장위1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39/27	
9	그린나래 어린이집 (권현정)	한천로713 (장위3동)	개 인 (권현정)	45/36	2019.11.01. ~ 2024.10.31.
10	장위3동 어린이집 (홍효의)	돌곶이로32길 43 (장위3동)	개 인 (홍효의)	120/107	
11	한빛 어린이집 (박은진)	성북로 37 (성북동)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이종명)	62/46	

가)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나) 수탁기관 선정 : 2024년 제3차,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2) 위탁 사업의 범위

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위탁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19p

나. 주요내용

- 아름드리 외 10개소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하반기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¹⁰⁾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9)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¹¹⁾ 및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제1항¹²⁾에서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¹³⁾,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 11)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5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2.28.)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현)위탁법인	시설규모	위탁기간
성북구자살예방센터 (개소일:2012. 3.)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21, 4층(월곡1동)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 연면적 : 38㎡ · 규모: 사무실, 상담실	[1기] 2012.03.01.-2015.2.28.
				[2기] 2015.03.01.-2018.2.28.
				[3기] 2018.03.01.-2021.2.28.
				[4기] 2021.03.01.-2024.2.28.

2) 위탁사무내용

○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을 통한 발굴 확대
- 우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위험성 평가 및 서비스연계 확대
- 자살위험성 감소 및 우울·고독감 해소를 위한 예방상담과 집중사례관리
-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사례회의 진행

○ 민·관 협력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자살예방사업

- 동별 자살예방지킴이 ‘마음돌보미’ 조직을 통한 자살예방 생명안전망 구축
- 마음돌봄활동을 통한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 확대
- 지역 위기대응능력 향상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직원대상 생명사랑 자살예방교육 진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 축제 등 지역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운영

○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 보건복지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업무협력 간담회 실시
-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살예방업무에 대한 협업체계 마련

3) 위탁기간 :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5) 위탁사업의 범위 :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다. 참고사항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 3.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⑥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이하 ‘자살예방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¹⁴⁾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2월 28일자로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현황 및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및 사업현황>

소재지	시설현황(㎡)	연간사업비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성북구 오패산로 21 4층	전용공간 38㎡	총 363,300천원 - 인건비 : 249,200천원 - 운영비 : 31,300천원 - 사업비 : 82,800천원	2021.03.01. ~ 2024.02.28. + 90일 연장 (~2024.05.28.)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부센터장 1 팀원 4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사 업 명	실 적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사업	- 고위험군발굴 및 상담 5,781건 - 사례관리 및 응급위기 개입 2,706건 - 고위험군서비스 연계 1,367건
지역주민참여 마음돌봄사업	- 마음돌보미 157명 및 대상자 133명 관리 - 회의 및 교육 664명 - 활동사례 9,018건 - 심리정서적지지 프로그램(복지연계, 물품제공) 2,171명
생명존중 문화조성 인식개선 홍보사업	- 매체홍보(뉴스레터, 홈페이지, 온라인홍보, 버스광고 등) 383,040건 - 생명사랑 인식개선 홍보활동 60,067명 - 생명존중 교육 370명 -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조직 38명 -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48,077건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사업	- 보건복지통합자살예방사업 업무협력 간담회 11건 - 위기대응기관 협력체계 운영 318명 - 생명존중 업무협약 6건 - 지역네트워크 협력 대외활동 52건 - 운영자문위원회 4건

※ 기준일: 2023년 실적

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및 타장성

-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¹⁵⁾에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¹⁶⁾에서 정한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있으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또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¹⁷⁾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센터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사업경험과 인력, 전문성, 사무처리 능력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됨.
-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제13조제3항¹⁸⁾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구의회 동의 후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¹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체를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민간위탁 종료 시한(2024.2.29.)을 앞두고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의안에 대한 심의 보류 등에 따른 위탁 절차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적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7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1월 21일 상정·의결(보류)】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2)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3)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4) 정신의료기관 지정, 예산 지원 등(안 제4조, 제10조)

5)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9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3) 협의사항 : 정책보좌관('24년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예산수요건)
- 4) 기 타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나)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 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예산확보 노력 필요)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법제심사 결과 : 검토 의견 참고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부서의견
법제심사	제7조제3항: 연임횟수의 제한이 없어 계속 연임 가능하므로 신규 민간위원 위촉에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민간위원은 정신건강전문기관 소속으로 다년간의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신규 민간위원 위촉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향후 협의체 운영시 참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제정안은 관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 치료,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본 조례안 관련 서울시 및 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를 비롯하여 12개구²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북구 응급정신질환자 행정입원과 관련하여 2021년 28건, 2022년 23건, 2023년 22건의 응급입원 사례가 있음.

〈 행정입원 건수 〉

(단위: 명)

분 류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건 수	28	23	22	73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시설”, “응급정신질환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제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20) 서울시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안 제4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있도록 ‘지정정신의료기관’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5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응급 상황 예방과 치료, 재발을 위해 응급입원비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최근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피의자가 정신병력 질환자로 확인되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신 질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 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제명을 수정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촉직 위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나. 수정 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으로 수정

- 안 제1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 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으로 수정
- 안 제2조에 제5호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안 제3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로 수정
- 안 제5조의 제목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을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응급 대응” 을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으로 수정
- 안 제6조 및 7조 협의체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3
----------	--------

제안 연월일: 2024년 2월 21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제명을 수정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촉직 위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2.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으로 수정
- 안 제1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 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으로 수정
- 안 제2조에 제5호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안 제3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로 수정
- 안 제5조의 제목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을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응급 대응” 을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으로 수정
- 안 제6조 및 7조 협의체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응급 대응”을 “정신건강 위기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응급 대응”을 “정신건강 위기대응”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 소속 기관장의”를 “기관 및 단체

의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 서울성북경찰서
3. 서울중암경찰서
4. 성북소방서
5.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6. 성북구자살예방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안 제7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위원의 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정신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을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로 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응급 상황”을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	<u>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 ----- ----- <u>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u>----- ----- ----- -----.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u>”란 <u>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u>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한 위기 대응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 및 역할 분담
2.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① (생략)

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속 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 성북경찰서 담당 부서

-----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

----- 정신건강 위기대응 -----
-----.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2. 3. (현행과 같음)

4. ----- 정신건강 위기대응-----
--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
-----.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u>장과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u> 2. (경찰) <u>중앙경찰서 담당 부서</u> <u>장과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u> 3. (소방) <u>성북소방서 담당 부서</u> <u>장과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u> 4. (정신건강전문기관) <u>정신의</u> <u>료기관 담당</u> 5. (정신건강전문기관) <u>응급진</u> <u>료협력병원 관계자</u> 6. (그 외) <u>정신응급관련 지식과</u> <u>경험이 풍부한 자</u> <u><신 설></u> <u><신 설></u> 제7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장은 <u>보건소장</u>으로 정하며 협의 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u>분기별 1회</u> <u>이상 실시하며 정신응급 상황으</u> <u>로 인한 현안</u>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0조(지원) 구청장은 <u>응급정신</u> <u>질환자의 정신응급 상황</u>을 예방 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2. <u>서울성북경찰서</u> 3. <u>서울중앙경찰서</u> 4. <u>성북소방서</u> 5. <u>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u> 6. <u>성북구자살예방센터</u> 7. <u>정신건강증진시설</u> 8.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단체</u> 제7조(협의체 운영) ① ----- --- <u>위원의 호선</u>----- -----. ② ----- <u>정신건강 위</u> <u>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 ----- <u>정신건강 위기상황</u>----- ----- ----- -----
--	--

있다.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의 지정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 서울성북경찰서
3. 서울종암경찰서
4. 성북소방서
5. 성북구청신건강복지센터
6. 성북구자살예방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7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 참석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의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